

사회복지 현장실습 관련 공지

사회복지현장실습 및 보육현장실습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
학생이 현장실습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하기 전에 우선 학생이 기관선정을 하여야 합니다.

기관에서 실습요청을 **수락**하면 첨부파일인 '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'를 작성하여

학과 사무실 직접 제출 혹은 family6819@naver.com 으로 보내주세요

메일 제목 : [사복] 학번, 이름

같은 기관에 여러 명이 신청할 경우, 한 파일에 단체신청 가능

메일 제목 : [사복] 학번, 이름 외 0명

공문 발송까지 완료가 되면 학과 사무실에서 신청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.

- 실습기관 및 실습시간 등 실습 관련 규정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선정하고 수업을 들을 것
- 기관 선택 시 추천기관 리스트 참고해서 결정할 것, 복지부 선정기관인지 꼭 확인할 것
- 기관 선택 시, 지역아동센터는 피할 것 (지역아동센터를 선정 할 경우 이유를 꼭 제시)
: 센터 중 식사비를 받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보고되고 불성실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며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경험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실습기관으로는 추천X
- 선수과목 확인할 것 : 사회복지 실습기관의 경우 선수과목을 요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실습기관에 꼭 문의 해 볼 것
- 사회복지 관련 과목 미 이수자는 실습담당 교수와 상담 후 진행 할 것 (사회복지학개론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례관리, 지역사회복지론 중 최소 2과목)
- 실습참가생 대상으로 실습 오리엔테이션이 2회 있음 (날짜 추후 공지) 참석 필수
- 실습일지 및 관련 자료 미제출시 학점 인정 X
- 여름방학 실습 후 학과 홈페이지 커뮤니티 -실습후기 게시판에 후기 정보를 남길 것
- 실습기관 선정 시 후기 참조
- 실습 무표 조항(18조)를 참고하여 실습에 임할 것

제18조(실습의 무효) 현장실습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현장실습은 무효처리 된다.

1. 기관의 실습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
2. 실습기간의 1/4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
3. 실습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이탈한 경우
4. 실습기관을 지정받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을 거부한 경우

-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였던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는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할 모든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.

※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

(<http://lic.welfare.net/Index.action>)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후에 희망기관에 문의전화를 할 때에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